# 「주택청약예금」특약

## 제 1 조 적용범위

주택청약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합니다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거치식예금약관,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적용합니다.

## 제 2 조 가입대상

- ① 이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만 19세 이상의 자(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포함합니다) 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희망 주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 예금과 주택청약부금,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 에 한합니다.

## 제 3 조 계약기간 등

- ① 청약예금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, 매1년 단위로 만기원금을 자동재예치 합니다. 그러나, 당첨등록된 계좌는 자동재예치 처리하지 않습니다.
- ② 당첨된 주택청약예금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

## 제 4 조 이자지급방법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일 당시 거래자가 월별이자 지급방법과 만기이자 지급 방법 중에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지급 합니다. 다만 만기이자 지급방법을 선택 한 경우에는 거래기간중 월별이자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예금일(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예치의 경우에는 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월별이자 지급방법 해당이율을 예금일(또는 재예치일)로부터 적용합니다.

## 제 5 조 우대이자 지급

이 예금은 예금주가 아래의 각 우대이율 항목에 해당하는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만 적용되며, 항목별로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. 최초 신규일로부터 1년간 우대이율 적용합니다. 또한, 재예치 계좌 및 전환신규(평형변경신규/지역간 예치금변경신규)계좌에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- 1. 직장인우대종합통장 보유고객 우대이율(주택청약예금 가입시점에 보유)
  - 영업점 창구에서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: 연0.2%p
  - 인터넷뱅킹으로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: 연0.3%p
  - 영업점 창구에서 직장인우대종합통장 보유고객이 차세대주택종합통장, 미래로통장, 캥거루통 장을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: 연0.35%p
- 2. 명품여성종합통장 보유고객 우대이율(주택청약예금 가입시점에 보유)
  - 인터넷뱅킹으로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: 연0.3%p

## 제 6 조 특별중도해지

이 예금 가입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일(또는 재예치일) 당시의 약정이율을 지급합니다. 단, 우대이율은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.

- ① 재예치후 해지
- ② 평형변경을 위한 해지

- ③ 거주지역이 변경되어 예치금액을 바꾸기 위한 해지
- ④ 1개월 경과후 당첨등록된 계좌의 해지

## 제 7 조 양도 및 질권설정

이 예금은 타인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위해 질권설정할 수 없습니다.

부 칙(1)

구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예금 및 구 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은 2002.9.23부터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.

부 칙(2)

이 약관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.